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2,403,036	12,672,091
일반회계	398,150,405	11,944,512
특별회계	24,252,631	727,579
기타특별회계	24,252,631	727,5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62,985	130,890
의료급여특별회계	1,230,635	36,91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669,758	50,093
주택사업특별회계	24,194	726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4,965	2,849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294,069	98,822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294,676	8,84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6,581,122	197,434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15,443	463
장흥담관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76,310	74,289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4,208,474	126,25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3,562,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